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부산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노3973,2015 노4217(병합) 판결 모욕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5노3973, 2015노4217(병합) 모욕

피고인 1. B

2.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세현, 오진희(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V(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2160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정1480 판결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제1 원심판결
-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해자의 부당한 학교 운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2014. 4. 23.. 같은 달 27. 범행 현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B은 2014. 5. 9. 집회 현장에 있었으나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집회장소에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 가. 제 1원심판결
-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23:0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밴드 'G고등학교 1학년 전체'에 "H은 학교에 투자는커녕 학교 시설및 복지 자금을 약탈하는 악질 기업가입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돈 버는 파렴치한 사람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S재단의 이사장 H이 G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성적이 우수한 인문계 학생을 모집하여 국 제반을 만들고 나머지 예체능계 학생들과 교실과 기숙사 등도 따로 쓰게 하는 등의 차별적 대우를 했고, 국제반 학생들을 의대 및 법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업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예체능계 학생들과 내신성적을 통합산출함으로써 예체능계 학생들의 내신성적이 매우 불리하게 산정되게 한 점, 2 피고인은 학부모로서 자신의 자녀가 G고 등학교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글을 작성하고 이러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라 2014. 5. 2.부터 2014. 5. 23.까지 이루어진 부 산시교육청의 감사결과 국제반 불법 모집 및 편성운영의 부적정, 회계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부적정이 밝혀지고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이사장에서 해임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점, 4 전체 글에 비추어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점, 5 위 밴드는 'G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공개 모임으로 밴드의 운영자가 대화자를 선별하여 초대한 뒤 가입하는 형식을 취한 점 등을 인정할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G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들 사이의 의견교환의 장소에서, 실제 존재한 학교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S재단의 이사장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14. 4. 23. 같은 달 27.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와 같은 현수막, 피켓 등을 준비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집회 참석을 독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법리 적용은 옳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원심판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2014. 5. 9. 10:30경 S가 피켓을 들고 시위할 때 피고인 B이 옆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 2 피고인 B은 본 시위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사실, 3 2014. 5. 9.자 사진에서 A으로 지칭된 자와 피고인 A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당일 오후 2:00경 유치원 수업이 있더라도 오전 10:30경 집회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2014. 5. 9. 10: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종합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가. 1)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 가. 1)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안희경 박정진